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7가합553050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종순

피 고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규호, 유준구

변론 종결 2019. 8. 28.

판결 선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8. 10.까지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2,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 1) 원고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C사업'을 도급받아 2015. 6. 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에게 'C사업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693,580,000원,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369,358,000원), 공사기간 2015. 6. 5.부터 2017. 1. 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 2) 원고는 2015. 11.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도급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라 위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3,729,88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 1)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5. 원고에게 보증금액 369,358,000원, 보증기간 2015. 6. 5.부터 2017. 1. 9.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고, 2015. 12. 1. 추가로 보증금액 3,630,000원인 하도급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하도급(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증책임)
1 피고는 계약자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

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이 보증은 계약금, 착수금 등의 명칭에 불문하고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선금에 대한 채무는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 한도)

1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2 제1항에 규정한 실제 손해액에는 지체상금 약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증금 지급시기)

피고는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가 확정된 부분은 심사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및 정산

1) 원고는 2016. 3. 25.경 소외 회사에게 '계약된 공기 내에 목적물의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이행보증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킨다'라고 통보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4.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지속적인 공정 지연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강제 계약해지'를 이유로 하여 계약금액을 588,500,000원으로 하는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다.

라. 원고의 보증금 청구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상 계약보증금

372,988,000원의 지급을 청구(이하 '이 사건 보증금 지급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증금 지급채무의 발생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1조가 '피고는 계약자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2016. 3.경 이미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및 중단 등을 이유로 해지되었음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금 지급채무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약관 제3조 제1항은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라고 정하였고, 당사자들은 위 보증약관의 규정에서 말하는 '주계약'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 조항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의 범위는 보증금액인 372,988,000원(= 당초 보증금액 369,358,000원 + 추가 보증금액 3,630,000원)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인 원고의 실제 손해액이다.

원고의 실제 손해액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이후 잔여 공사 중 일부는 주식회사 E 등의 업체(이하 '기타 공사업체')를 통하여, 일부는 원고가 직접 시공하였고,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무렵인 2016. 3.경을

기준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이사건 공사에 관한 합리적인 타절금액은 403,464,027원, 그에 따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잔여 계약금액은 3,326,415,973원(= 3,729,880,000원 - 403,464,027원)인 사실, 이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이후의 합리적인 후속 공사 비용은 ① 기타 공사업체를 통하여 시공한 부분 2,250,557,000원, ② 원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 1,661,620,248원, 합계 3,912,177,248원(= 2,250,557,000원 + 1,661,620,24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잔여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중 당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보다 증가된 금액은 585,761,275원(= 후속 공사비용 3,912,177,248원 - 잔여 계약금액 3,326,415,973원)이 되고, 위 돈이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액 372,988,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액 372,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약관 제9조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이 도과한 다음 날인 2016.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7. 8.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 지급 청구 다음 날인 2016. 4. 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보증약관 제9조는 보증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지급을 청구한 2016. 4. 8.을 기준으로,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결정에 필요한 기한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7일¹⁾과 보증금 결정 후 지급 기한인 7일, 합계 14일을 더한 2016. 4. 22.이 보증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위 이행기 다음 날인 2016. 4. 23.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현행 규정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성중, 판사 김선범, 판사 강수민

1)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결정에 필요한 기한에 관하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바, 이 사건 보증약관 제9조에서 보증금 결정 후 지급 기한을 7일로 정해 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